



대학평의원회 회의록(05)

일 시 : 2017년 01월 26(목) 15시

장 소 :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

참석위원 : 조치웅(위원장), 김영상(서기), 김영안, 김현희, 오복자, 이준태, 장성일

불참위원 : 위경수, 조석호, 최준환

첫 기 도 : 조치웅

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
개회

위원장이 교수대표(4명), 직원대표(3명), 학생대표(1명) 등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제5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.

위원장 : 금일에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

안건 1. 학칙변경(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안)

안건 2. 학칙변경(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안)

안건 3. 학칙변경(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안)

안건 4. 학칙신설(안)

위원장: 먼저 학칙개정 및 신설의 시급함으로 인해 부득이 긴급 회의소집을 할 수 밖에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함

위원 ○○○: 회의 안건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(안건 1, 2와 안건 3, 4)은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제안함

위원장: 본 제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
전체위원: 전체적으로 동의

위원장: 위원 ○○○의 제안과 전체위원의 동의로, 안건 1,2 와 안건 3,4를 하나로 묶어 안건심의하기로 함

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 자문

위 원 장: 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 자문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대학원 교학팀장에게 주요내용 설명을 요청함.

교학팀장: 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.

1) 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

- 대학원 신설 및 학과명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재학생들의 소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 추가
-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외국어시험 점수 변경(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지침에 명시된 점수와 동일하게 변경)

2)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

-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임상간호대학원으로 대학원명 변경되고 단일 학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학칙 정정

위원 ○○○: 현재 '보건바이오융합학과' 학생은 몇 명 남아있고 학생들의 동의는 구할 수 있는가?

교학팀장: 남아있는 학생은 박사 4명, 석사 1명이며, 학생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음.

위원 ○○○: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보건학과 재학생은 보건학과가 폐과되더라도 학적은 보건학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학칙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의미를 현재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비록 학과가 사라졌지만, 수료후 향후 어느시점이라도 졸업요건이 되어 졸업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?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느정도 되는가?

교학팀장: 교수님 말씀이 맞다.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2명이고, 이들은 수료 후 나중에 졸업할 경우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졸업하게 되는 것임

위 원 장: 다른 이의가 없으면 안건 1, 2(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(안) 자문)에 대해 거수로 가부 여부를 표해주시기를 요청함

전체 위원: 거수함

위 원 장: 본 안건 1, 2에 대해 별 위원들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.

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및 학칙 신설(안) 자문

위 원 장: 안건 3.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및 안건 4. 학칙 신설(안) 자문에 대해 안건 상정하고, 안건내용에 대해 교수지원팀장에 설명을 요청함.

교수지원팀장: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및 학칙 신설(안)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.

1)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속기관 및 변경

위원 ○○○: 혹시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자주 강조하고 이렇게 규정까지 만드는 이유가 대학구조조
정과 연계가 있는가? 또한 이렇게 연계전공, 융합전공을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과연 학
과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보는가?

교수지원팀장: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, 현재 학과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를
가지고 어느학과를 없애고, 어느교수를 키워주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. 단지, 지속되
는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계전공과, 융합전공의 규모가 많은 점수를 얻는 면도 있고, 학생들의 중
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추진 중이라고 이해해 주길 요청드립니다

위원 ○○○: 전공학점을 39학점으로 낮추는데, 과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했다고 할 수 있
는가? 현재 42학점도 너무 적은 편인데,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함. 학생들이 공부
하러 왔는데, 공부가 되겠는가? 다른 대학들은 알아보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?

교수지원팀장: 현재 정부에서 곧 발표예정인 대학학사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타대학들도
어느정도 이러한 추세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.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얼
마전 수도권 대학들을 조사했을 때에도 현재 전공학점이 36~40학점사이로 과거 교수님들 시대
에 비해 많이 낮아짐.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융복합 교육을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
생들도 한 전공에 깊이 공부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접목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
있음

위원 ○○○: 정부 재정지원도 중요하고, 학생들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에 무조건 발맞추는
것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음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접근하고 한 두학기 타 대
학의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진행 했음면 함. 위원장께 본 안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
진행해 주시길 제안함

위 원 장: 본 안전 3, 4에 대해 규정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면 타 대학의 운영사례를 지켜보며 개정
하는 것에 대해 제안받은 바를 심의결과에 반영하는데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받고자 함

위원 ○○○: 현재 시점에서 규정 개정 및 신설이 미루어지면 재정지원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
로 알고 있는데, 표결 전에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획팀장의 의견을 듣고싶
음

기획팀장: 현재 ACE+사업 등 올해 예상되는 많은 재정지원사업에 연계전공/융합전공의 신설 및 진
행여부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함. 실제로 ACE+사업 및 프로임사업 등을 수행하는
대학들에서는 10개 이상의 연계, 융합전공이 신설운영되고 있음

위원 ○○○: 그럼, 올해 ACE+ 사업에 도전하려면 이번 학칙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, 뒤로
미루기 보다는 행정부에 연계, 융합전공 규정이 몇몇 개인들에 의해 휘둘러져 운영되지 않도록
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

대다수의 위원들: 그 뜻에 동의를 포함

위 원 장: 그럼 안전 3, 4(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및 학칙 신설(안) 자문)에 대해서는 융합, 연계

2016-0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(2017.1.26)

전공 개설관련 어느 개인에 의한 신설 및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제안하기로 함, 더불어,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가부여부를 거수로 표해주기를 요청함

전체 위원: 거수함

위 원 장: 본 안건 3,4에 대해 위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. 단, 융합, 연계전공 개설은 공정하고 어느 개인에 취우치지 않고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함.

회의 종료

위 원 장 : 2016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.

끝 기 도 : 이준태

붙임3.

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

[제정: 2017. 1. 1]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교 정규직(연봉제)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연봉계약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"연봉제"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.
- ②"기본급"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.
- ③"성과급"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.
- ④"연봉월액"이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.
- ⑤"일할계산"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해당 월 지급액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"초임 연봉"이라 함은 직급별 임용 교직원에 대해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.

제3조(교직원의 연봉 결정 및 조정)

- ①교직원의 연봉은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매 학년도 초에 책정한다. 다만, 외국인 전임교원 및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.
- ②신규임용 교직원의 연봉은 자격조건, 경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최초 임용계약 시 정한다.

제4조(연봉지급)

- ①교원의 연봉은 본봉 및 연구비로 구성하며, 직원은 본봉으로 한다.
- ②교직원의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연봉 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.
- ④신규임용, 휴직,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.
- ⑤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병가 중의 연봉지급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⑥인사규정에 의거해 휴직한 교직원의 경우 휴직일이 속한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, 둘째 달은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하고, 그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직 초일이 급여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.
- ⑦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연봉은 휴직 당시의 기본급으로 결정한다. 단, 대학이 필요에 의해 휴직

을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⑧연구년 교수의 급여는 교원연구년 규정에 의한다. 특히 유급 해외연수의 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연수기간 중 급여는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연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)

①교원의 연봉은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및 정기평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정기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며, 직원의 연봉은 직원 근무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.

②매년 연봉은 전년도 연봉에 당해년도 연봉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 연봉인상률은 전임교원 및 정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인상률과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성과인상률의 합으로 구성되며, 각 인상률은 당해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. 또한, 학과(부)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학과 소속교원의 연봉 인상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 연봉인상률 및 조정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연봉결정 통보)

제5조에 의하여 연봉이 결정되면 교직원과 별도의 연봉 체결을 하지 않고 연봉 통보로 대체한다.

제7조(연봉 이의신청 및 재계약)

- ①교직원이 대학이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대학이 책정한 연봉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연봉 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8조(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)

- ①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부총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기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위원회는 교직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.
- ④위원회는 제3항 기준에 의거 연봉 감액 및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정한다.
- ⑤위원회는 교직원 연봉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조정한다.

제9조(연봉 지급의 제한)

교직원의 휴직, 징계, 직위 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,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유지)

연봉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준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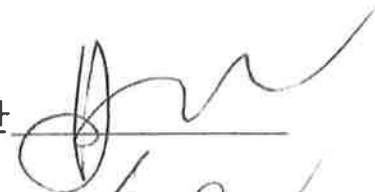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위원장 조 치 용 

서기 김 영 상 

위원 김 영 안 

위원 김 철 호 

위원 김 현 희 

위원 오 복 자 

위원 위 경 수 _____

위원 이 준 태 

위원 장 성 일 

위원 조 석 호 _____

위원 최 준 환 _____